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852

발의연월일: 2023. 3. 24.

발 의 자:백혜련·김영호·양향자

류호정 · 김병주 · 이성만

전용기 • 유관석 • 유건영

이정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촬영·보존하도록 하고, 그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기일에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해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 증거로 할 수 있도록하고 있음.

그런데 영상물에 수록된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위헌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면서도 증인 신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었음.

이에 영상물의 증거능력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19세 미만인

피해자가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는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은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안 제30조 및 제40조).

법률 제 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4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한다.

② 법원은 증인신문의 대상인 19세 미만의 피해자가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는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 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 한 중계를 통하여 신문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30조(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제30조(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① ~ ⑤ (생 략)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 <삭 제> 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나 조사 과정에 동석하 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 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 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7) (생략) (7) (현행과 같음) 제40조(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 제40조(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 한 증인신문) ① (생 략) 한 증인신문)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법원은 증인신문의 대상인 19세 미만의 피해자가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는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 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 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를 통 하여 신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인신문의 ③ 제1항 및 제2항에-----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u>.</u>